■ 건축사법 시행규칙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0. 6. 18.>

건축사 [ ]자 격 등 록 [ ]자격 갱신등록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 청 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
	전화번호	전자우편
	자격번호	자격취득일 년 월 일
근 무 처	근무처명	구 분 [ ]개인 [ ]법인
	개설신고번호	신 고 일
	소 재 지	
	전 화	전자우편
구 분	[ ] 건축사 자격등록 [ ]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	

[ ]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
[ ]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20조제3항 에 따라 [ ]건축사 자격등록
[ ]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건축사협회 회장 귀하

첨부서류	□ 건축사 자격등록 1. 건축사 자격증 사본 2.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사 윤리선언서 3.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가. 「건축사법」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나. 「건축사법」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다. 「건축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	수수료 20만원
	□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합니다)	수수료 10만원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 접 수	→ 심 사	→ 확 인	→ 결 재	→ 등록증 발급
신청인	건축사협회	건축사협회	건축사협회	건축사협회	건축사협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